

Kormarine Award 포상규정

제1조 (목적)

대한민국 조선·해양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조선·해양산업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상으로 이 규정은 Kormarine Award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시상대상)

- ① 본 Kormarine Award는 조선해양산업 전 분야에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조선해양산업분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.
- ② 상기목적에 부합하는 코마린 컨퍼런스 연사도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다.

제3조 (수상후보자 추천)

- ① 본 Kormarine Award의 단체 또는 개인 수상후보자는 코마린 컨퍼런스의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.

제4조 (수상자 선정)

- ① 운영위원의 2/3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, 의결시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.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 추천된 수상자는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으면, 운영위원회는 이를 수상자로 결정한다.
- ② 수상자 발표 시 선정기준을 함께 발표한다.
-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(시상)

- ① 본 Kormarine Award의 시상은 코마린 컨퍼런스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, 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6조 (시상의 취소)

- ①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거나, 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상을 취소한다.
- ② 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시상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.

제7조 (운영세칙)

-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②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2017. 02. 02 초안] [2017. 06. 28. 제정]